

# 고된 업무에도 법령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삶

##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속 정신건강 보호사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명신대학병원 정신병동의 에이스 보호사 윤만천(전 배수)은 환자들이 흥분할 때마다 노련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만능 해결사다. 환자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의 성장통도 함께한다. 특히 내과 3년 차 간호사인 정다은(박보영)이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 이후 힘들어할 때 다정한 위로를 전하며 세심히 살핀다. “모든 길은 만천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명신대학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든직한 정신적 지주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 이면에는 하루의 반 이상을 환자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보호사의 고된 업무가 존재한다.



### 과중한 업무와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보호사들

중증 정신질환자가 많은 정신병동은 의사와 간호인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보호사의 역할 비중이 높다. 보호사는 환자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의료·치료진에게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

### <최근 4개년 정신의료기관 직무별 현황>

(단위 : 명, %)

|           | 2018  | 2019  | 2020  | 2021  | 증가율   |
|-----------|-------|-------|-------|-------|-------|
| 정신과 의사    | 3,803 | 4,052 | 4,160 | 4,317 | 13.5% |
| 간호사       | 5,825 | 5,987 | 6,759 | 6,628 | 13.8% |
| 사회복지사     | 1,256 | 1,271 | 1,297 | 1,297 | 3.3%  |
| 간호조무사     | 5,295 | 5,597 | 6,042 | 5,761 | 8.8%  |
| 정신질환치료보조원 | 2,828 | 2,930 | 2,904 | 3,590 | 26.9%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보호자 응대와 각종 민원을 비롯해 병동 내 질서 유지, 금지 품목 확인, 환자의 외부 병원 진료 및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면회 동행, 환자의 식사와 처방약 복용 확인,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목욕과 몸단장을 돕는 등 업무가 과중하다.

보호사는 즉각적인 현장 투입도 잦다. 거친 환자를 진정시키거나 제압하고, 위급상황 시 의료·치료진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자의 임무도 보호사가 해야 할 일이다. 즉 물리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립병원과 사립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18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무려 17명(94%)이 환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폭행도 견뎌야 한다. 환자의 액팅아웃(불안에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방어기제) 발생 시 환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 경우 사후 보고를 통해 감정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트라우마를 얻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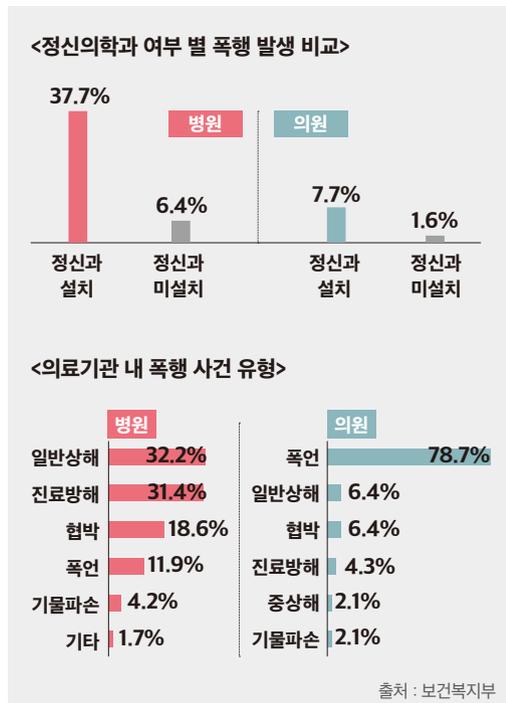
기도 한다. 늘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놓인 보호사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윤리적 딜레마와도 연결된다. 자신이 시행한 강박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추후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도 내포하는 것이다.

### 법적 제도와 정식 명칭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삶

이처럼 매우 높은 업무 강도에도 보호사는 법정 보건 의료인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국가공인자격증 제도가 없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정신건강보호사, 정신질환환자보호사, 환자관리보호사, 정신질환치료보조원 등 정식 명칭마저 모호하다. 대다수 2교대 근무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연차가 쌓여도 연봉제를 적용받아 과중한 업무 대비 적은 급여를 받기 일쑤다.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보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 역시 상당하니 스트레스 지수와 극한의 감정노동, 육체적인 피로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4개년 정신의료기관 직무별 현황<sup>1)</sup>’에 따르면 보호사는 2021년 기준 3년 사이 26.9%나 증가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약하다. 국내 50병상 이상 정신건강병원 대부분은 보호사 채용 시 별다른 자격증의 조건을 보지 않고 채용한다. 의료법에 보호사에 대한 설명조차 없고 구체적인 전문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환경이 많아 환자와 보호사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는 비단 정신건강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당장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우리의 건강과 모두가 안전한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의료기관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법령이 시급하다. <sup>6)</sup>



1) 해당 통계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보호사 수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보호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